2025년 7월

최신 노동뉴스

노무법인 의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053-719-2408
053-719-0019

- 차 례 -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안내 ····· 1
(참고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
2. 사고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 4
(참고 2)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현황(전국 24개소)
(참고 3) 온열질환 예방조치 모범사례
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안내 ····· 10
(참고 4) 온열질환 예방지침
(참고 5)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4.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 14
(참고 6) 온열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안내
5. 「폭염·호우 취약사업장」안전보건 일제 점검 ····· 17
(참고 7) 기계안전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참고 8)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참고 9)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첨부 파일 참고)
6. 육아휴직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원 ····· 21

【 붙임 】

(참고 9)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안내

❍ 제도 기본 내용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도취지	연차휴가 사용기한 만료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 및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촉진방법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3)개월 전*부터 10일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
효 과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보상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

*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6개월 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전

** 회계연도기준(1/1~12/31)의 경우 7/1~7/10, 입사일기준(예: 4/7 입사자는 10/7~10/16)

❍ 사용 촉진 방법 (1.1.~12.31. 회계연도 단위 연차부여 기준)

촉진방법	**원칙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나, **전자문서도**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 연락 및 기안, 결재 등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회사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촉진시기	입사1년미만	1차	사용계획제출통보(7/1~7/10), 사용계획제출(통보받고 10일이내)
		2차	(사용계획미제출시) 10.31.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 임의지정 통보
	입사1년이상	1차	사용계획제출통보(10/1~10/10), 사용계획제출(통보받고 10일이내)
		2차	(사용계획미제출시) 11.30.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 임의지정 통보

○ 촉진시기에 대한 이해도

구분	주체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재직 기간 1년 이상 근로자	법상	촉진기간 (7/1~7/10)	계획제출 (~10일이내)	사용계획 미제출	사용기한 ~12/31
	예시	7/7 (촉진일)	~7/17 (제출기한)	~10/31 (임의지정)	~12/31 (사용기한)
재직 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법상	촉진기간 (10/1~10/10)	계획제출 (~10일이내)	사용계획 미제출	사용기한 ~12/31
	예시	10/4 (촉진일)	~10/13 (제출기한)	~11/30 (임의지정)	~12/31 (사용기한)

참고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입사 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입사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5. 30 ~ 9. 30.까지 124일간

○ 고용노동부는 5.28.(수) 16:00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올여름 폭염 대비 안전보건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

○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25.6℃)은 역대 최고**, 폭염 일수(24일)는 3위를 기록했다. 극심한 무더위로 온열질환 **산업 재해자(63명)도 2018년(65명, 폭염 31일 역대 최고) 이후 가장 많이 발생**

여름철 평균기온('73~'24년,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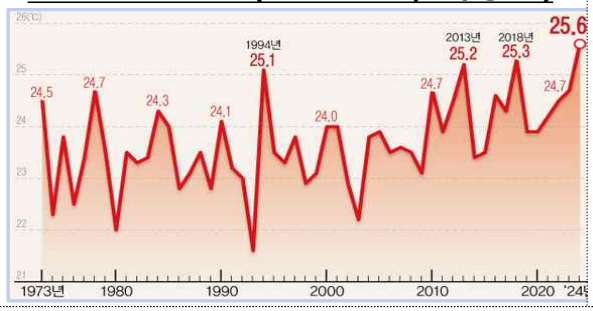

온열질환 산재 현황('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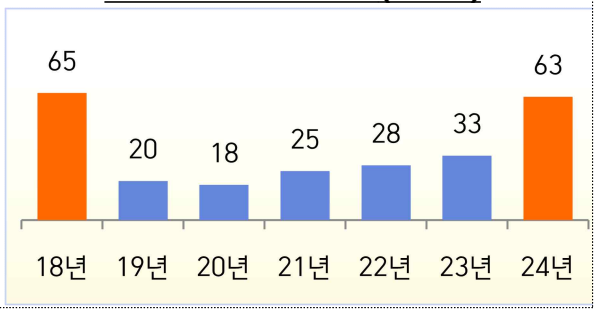

○ **업종**은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49.2%)**에서, **규모**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1.9%)**에서, **연령**은 **50대 이상(55.5%)**에서 많이 발생

업종별 산재 현황('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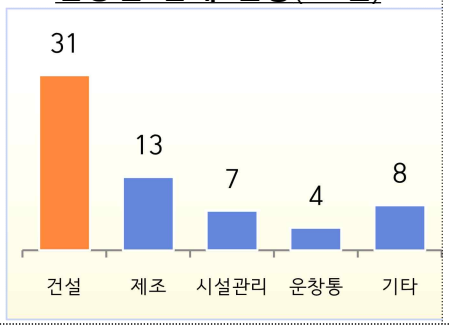

규모별 산재 현황('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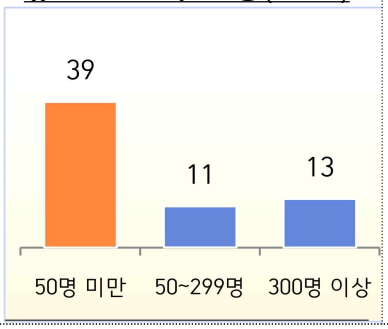

연령별 산재 현황('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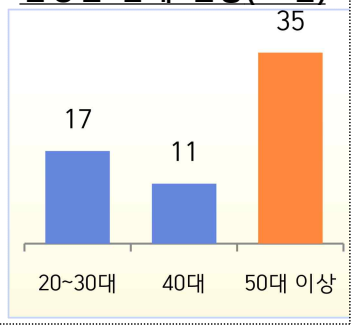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는 올여름 또한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 **대책을 9.30.까지 시행**

○ 먼저, 5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일 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4일간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

- 특별대책반에는 **지방관서**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대폭 참여**한다. 현장의 폭염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근로자건강센터***(24개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

*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320여 명의 산업보건 전문인력이 매년 20여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성 중독사고 예방,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

○ 둘째, 온열질환 예방5대 수칙을 사업장에 적극 알려 준수토록 지도

- 폭염작업(체감온도31℃ 이상)에 따른 열사병·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❶시원한물, ❷그늘·바람, ❸휴식, ❹보냉장구 지급, ❺응급조치)**을 적극 알리고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2. 그늘.바람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실내·옥외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119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 셋째,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집중 관리

-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에서 6만 개소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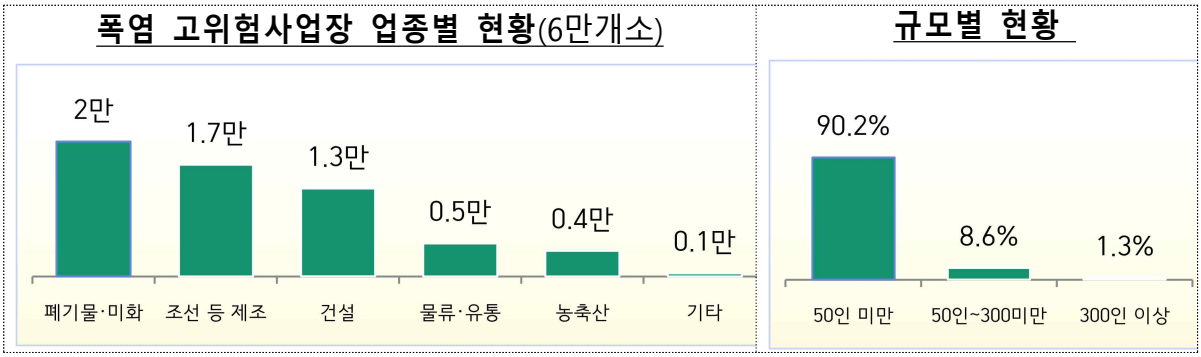

- 이들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지난 6월20일가지 20일까지 3주간 스스로 자체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하도록 하였다.

- 자율점검기간 이후에는 지방관서에서 온열질환 예방 5대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한다. 지방관서는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①냉방・통풍장치 가동, ②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시간대 조정, ③휴식 부여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재해원인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도 적극 살펴볼 방침이다.

○ **끝으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병행 지원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한다.**

- 전문기관 도움 없이는 개선하기 어려운 작업장의 공기 흐름을 진단하여 제트팬 등 환기장치 설치나 시설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해 준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강증진부:052-703-0787~8)으로 연락하면 된다.

- 또, **온습도계(3만 개소), 이동식에어컨(7천 개소), 응급키트 등의 온열질환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례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폭넓게 모아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

참고 2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현황(전국 24개소)

지역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	서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 (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호	02-6947-5700 02-2268-6497
	서울서부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 (서울성동분소)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	02-2093-2650 02-6077-7500
부산	부산	부산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 (양산분소)경남 양산시 대평들3길 2 1층	051-329-7300 055-385-7301
대구	대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지니스센터 7층 (서대구분소) 대구 서구 평리로21길 33 (대구달성분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053-585-5501 053-584-2406 053-617-9701
인천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30 4층 (인천부평분소)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지하1층 116호	032-260-3661 032-528-1155
광주	광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광주광산분소)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5층	062-955-6497 062-941-6497
대전	대전	대전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1층)	042-936-9571
울산	울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울산북구분소)울산 북구 산업로 1020(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052-201-9960 052-288-7772
경기	경기동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성남분소)성남 분당구 판교역로240 삼한하이펙스 A동 127호	031-739-9301 031-698-2990
	경기서부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 (군포분소)경기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아이티밸리 동 1202호	031-364-7680 031-8086-7195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2층 (평택분소)경기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성은상가 1층	031-205-8960 031-663-8953
	경기북부	경기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층 (남양주분소)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단로70번길 6, 2층	031-858-9030 031-572-9032
	부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1단지 관리동 3층 (김포양촌분소)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7 메카존 나동243호 (김포고촌분소)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8번길 105-1유호빌딩 204호	032-329-9161 031-999-7602 031-998-9165
경남 경북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창원SK테크노파크테크동 11층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055-713-2400 070-4270-0240
	경산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 (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	053-853-8579 054-338-8541
	경북북부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 (구미분소)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비지니스지원센터 213호	054-475-2511 054-465-2511
		(직업트라우마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여헌로 30(미래로병원 4층)	054-716-0009
	거제	(분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65, 서호빌딩 5층	055-636-0386
전남 전북	전남동부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	061-692-9640
	전남서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대불 관리동 2층	061-462-2900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 (완주분소)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850-15 전북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063-211-9988 063-262-7733
충남 충북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J빌딩 2층 (아산분소)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	041-522-8993 041-547-7993
	충북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	043-218-9415
	충남서부	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8, 보령버스종합터미널 2층	041-402-8880
강원	강원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04호 (춘천분소) 강원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033-745-7289 033-262-2788
제주	제주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연동분소)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1층	064-752-8961 064-745-8961

참고 3 온열질환 예방조치 모범사례

1 (온도측정)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 체감온도를 측정하여 폭염상황을 전파

우수사례

- 체감온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에 따라 폭염 상황을 방송/전광판 등으로 전파
- 휴식알리미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 체감온도를 간접적으로 확인

체감온도 측정 상황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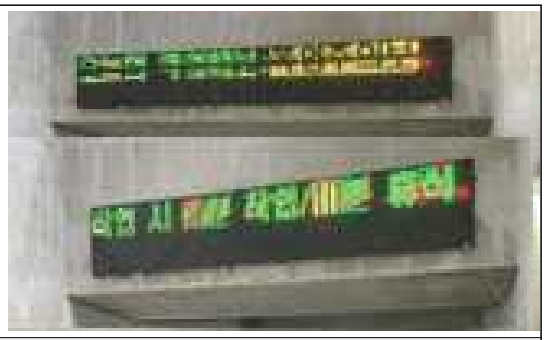
	〈폭염작업 체감온도 측정〉	〈휴식 부여토록 전광판 활용 상황전파〉

2 (온습도 조절장치 등) 국소냉방장치 및 통풍시설, 그늘막 설치

우수사례

- 집중 근무장소에 국소냉방장치 설치, 상하차 공간에 제트팬 설치
- 건설 현장의 작업장소에 커튼식 그늘막 설치

온습도 조절장치		
	〈근무장소에 국소냉방장치 설치〉	〈상하차 공간에 제트팬 설치〉
그늘막 설치		
	〈아파트 공사현장 내 커튼식 그늘막 설치〉	

3 (휴식 부여)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우수사례

-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혹서일/혹서기간 중 점심시간 연장 운영
  * 금년도부터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오전/오후 휴게시간 추가 예정
- 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동 현장은 차량을 활용하여 쉼터 제공

휴식 부여

기준온도	체감온도 33℃ 이상
기준시각	오전 10시, 오후 3시
적용범위	전사 공통 적용 (실내/외 장소 구분 없음)
운영방식	기존 휴게시간(10, 15시) 10분 연장

체감온도	휴게시간 10시	휴게시간 15시	비 고
33℃ 미만	10분 휴식	10분 휴식	현행 유지
33℃ 이상	20분 휴식	20분 휴식	+ 20분

* 혹서일 중식 휴게시간 연장과 별도 적용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쉼터 형식으로 고드름카 운영〉

4 (휴게시설) 태양광 패널 적용 휴게시설 또는 작업장소에 쉼터 설치

우수사례

- 옥외 작업장소에 태양광 패널 적용 휴게시설 설치 등
- 작업장소가 넓지만 1분 내 접근 가능하도록 곳곳에 쉼터 설치

휴게시설

〈태양광 패널 휴게시설 설치〉

〈주된 작업장소에 쉼터 설치〉

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안내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

○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9.30.까지 **지도·점검**한다.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①**냉방·통풍장치 가동**, ②**작업시간대 조정**, ③**휴식 부여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참고 3: 온열질환 예방지침

참고 4: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참고 4 온열질환 예방지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체감온도 계산기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중지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2025-산업보건실-246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PEN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증상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온열질환 조치 요령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참고 5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ㅇ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적정 □ 개선 필요
2. (바람·그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ㅇ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적정 □ 개선 필요
ㅇ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적정 □ 개선 필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ㅇ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시원한 물 비치	□ 적정 □ 개선 필요
ㅇ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적정 □ 개선 필요
ㅇ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적정 □ 개선 필요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ㅇ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적정 □ 개선 필요
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ㅇ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적정 □ 개선 필요
ㅇ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적정 □ 개선 필요
6. 그 외 예방조치	
ㅇ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알 수 있는 온습도계 비치	□ 적정 □ 개선 필요
ㅇ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적정 □ 개선 필요
ㅇ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 기록·보관	□ 적정 □ 개선 필요
ㅇ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계획 수립 *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 적정 □ 개선 필요

4.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 '25. 6. 23. ~ 9. 30.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
▶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 (함께 점검)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다.

○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

○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 **대전지방법원 판결(2025.6.13.) 요지**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

□ 또한,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하여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

❍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하면서,

-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5: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안내

참고 6 기계 · 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안내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안내

기계기구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덮개 등을 설치하여 **위험부위를 방호**하고, 정비·보수 시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준수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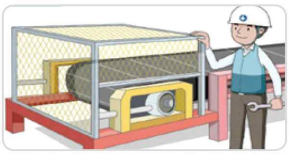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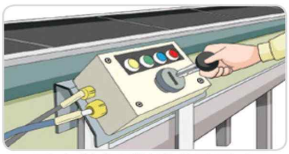
정비, 보수 작업시 운전 정지

기동장치,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 덮개 등 방호조치 방법, 정비·보수 시 작업절차 등 기계기구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침 참고
(경로: 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KOSHA Guide → 기계일반지침)

원동기·회전체 등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사례

기계기구	부적절한 사례	위험부위 방호	기타 설치사례	
원동기	〈원동기 위험부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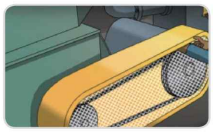 〈위험부 방호덮개 설치〉	완전방호형	완전방호형
가공 설비 (드릴링 머신 등)	〈덮개를 열고 작업〉	〈가동 중 덮개 설치〉	열림 기능, 투명재질	회전체 방호덮개, 작업대
컨베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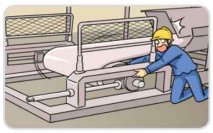 〈방호울 내 신체 접근 가능〉	〈접근 차단 방호울 설치〉	동력부 근접 덮개	동력부 근접 덮개
컨베이어 상부	〈컨베이어 상부 이동〉	〈건널다리 설치〉	상부 건널다리	건널다리 및 양측 통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5. 「폭염·호우 취약사업장」안전보건 일제 점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25일(수)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에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0,000여 개소, 호우 취약 6,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 ▲**(폭염)** 건설업, 조선업, 물류·택배업, 운수·창고업, 농림축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호우)** 홍수·붕괴·침수 및 매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인근의 취약 사업장

○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❶시원한 물, ❷바람・그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❹보냉장구 지급, ❺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7 안전 호우 · 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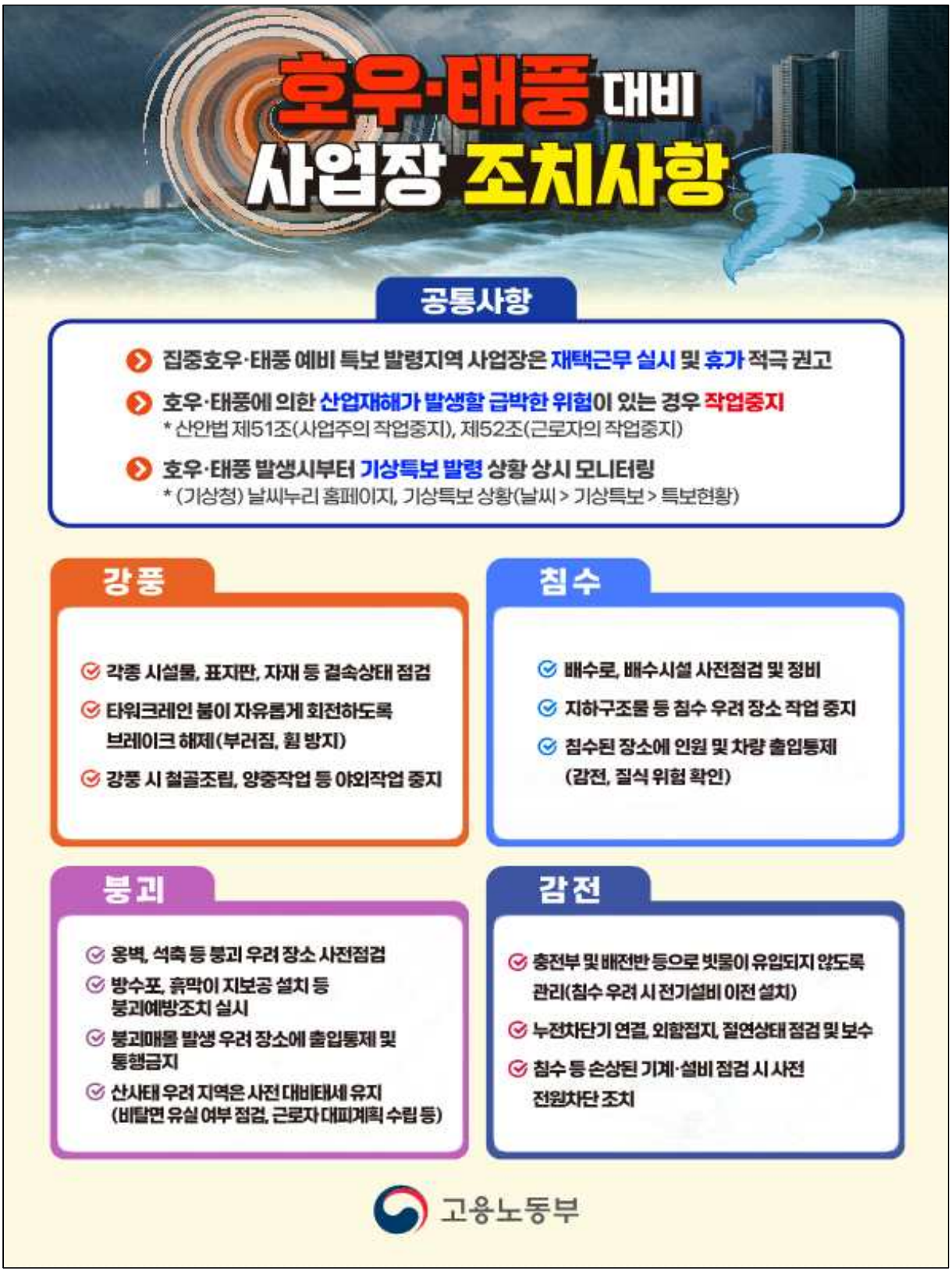

참고 8 호우 · 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사업장명		점 검 자	
소 재 지		점검일자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사항 및 개선계획
☑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		
☑ 호우·태풍 시 재난 위험장소(토사유실, 지반약화, 산사태 우려 등)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		
☑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없는가?		
☑ 호우 시 침수 위험은 없는가? (배수구 점검 실시)		
☑ 침수 시 전기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 침수 시 오물 유입 등 위생상 문제되는 곳은 없는가?		
☑ 침수 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 정전 대비 비상구호 용품(손전등, 양초 등)이 구비되었는가?		
☑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복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 도급·수급 사업장이 합동 점검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논의하였는가?		
☑ 자연재난(산사태 포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		
☑ 호우·태풍 발생 후 복구 시 조치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가?		

대응요령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하고 대피**

사업장 :

점검자 : (서명)

대표자 : (서명)

참고 9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025-건설안전실-277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2025. 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6. 육아휴직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원

* 기존 사업주에게 50% 지원하던 것을 100% 지원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6. 2.)

○ 청년들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K-Move(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6. 2.)

○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신청 건수 및 공모한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

* (법) 부정수급액 5배 이하 금액 추가징수, (現 시행령) 부정수급액 이하 금액 추가징수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 기준의 점검·관리 효율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5. 6. 2.)

○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2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